상조회칙

목 차

제 1 조(명칭) ····· 1
제 2 조(목적) ····· 1
제 3 조(회원) ····· 1
제 4 조(회원의 의무) ····· 1
제 5 조(운영자금) ····· 1
제 6 조(상조회 기금운용) ····· 2
제 7 조(경조사의 종류 및 지급기준) ····· 2
제 8 조(지급절차) ····· 2
제 9 조(상조회 조직) ····· 2
제10조(정기・임시회) ····· 3
제11조(의결) ····· 3
제12조(회계연도) ····· 3
제13조(회계감사) ····· 3
제14조(회칙개정) ····· 3
부칙 ····· 3
별지
제1호서식(상조회 가입신청서) ····· 5
제2호서식(경조금 지급신청서) ····· 6
제3호서식(상조회 탈퇴신청서) ····· 7

상조회칙

제　　정　2013. 7. 31.
개　　정　2015. 1. 23.
개　　정　2016. 1. 6.
개　　정　2016. 4. 12.
개　　정　2017. 3. 24.
개　　정　2017. 6. 29.
개　　정　2019. 4. 17.
개　　정　2020. 11. 27.
개　　정　2021. 4. 26.
개　　정　2022. 6. 9.
개　　정　2022. 9. 22.

제 1 조(명칭)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조회 운영을 위한 이 회칙의 명칭은 상조회칙이라 한다. 〈개정 2017.6.29.〉

제 2 조(목적) 이 회칙은 위원회에 재직하는 임직원 상호간의 친목, 상부상조,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상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9.〉

제 3 조(회원) ①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상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17.6.29.〉

1. 위원회 상근임원
2. 위원회 직원 〈개정 2016.4.12.〉

② 상조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조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제 4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상조회칙을 준수하고 매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회비를 분기납 또는 연납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2022.06.09.〉

② 휴직 등의 사유로 매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③ 휴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의 최종 납부월 기준으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이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6.29., 2021.4.26.〉

④ 회원은 탈퇴 희망 시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원은 탈퇴신청서 제출월의 말일에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회원자격 상실 전까지는 회원으로서의 권리, 회비납부 등의 의무는 유지된다. 〈개정 2022.06.09.〉

제 5 조(운영자금) ① 상조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 회비
2. 기타 수입

② 회비는 월 1회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1.23.〉

1. 상근임원 35,000원 〈개정 2016.1.6.〉
2. 1급 25,000원 〈개정 2016.1.6.〉
3. 2급 20,000원 〈개정 2016.1.6.〉
4. 3급 15,000원 〈개정 2016.1.6.〉
5. 4급 10,000원 〈개정 2019.4.17.〉
6. 5급 7,500원 〈개정 2019.4.17.〉
7. 6급 5,000원
8. 삭제

③ 회비는 상조회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개정 2015.1.23., 2017.6.29., 2022.06.09.〉

④ 신규직원의 상조회비는 입사일 기준 익월부터 납부한다. 〈개정 2020.11.27.〉

제 6 조(상조회 기금운용) 상조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회원의 경조사 비용
2.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상조활동 비용
3. 상조회 운영비용

제 7 조(경조사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결혼 : 500,000원 〈개정 2019.4.17.〉
2. 자녀결혼 : 300,000원 〈개정 2019.4.17.〉
3. 본인자녀출산 : 200,000원 〈개정 2021.4.26.〉
4. 본인사망 : 500,000원 〈개정 2019.4.17.〉
5. 배우자사망 : 500,000원
6.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의 사망 : 300,000원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100,000원 〈개정 2016.4.12.〉
8. 삭제 〈개정 2021.4.26.〉\
9. 정년퇴직 회원 축하금 : 200,000원
10. 근속격려금(입사일기준)
   - 1년 : 100,000원
   - 3년 : 100,000원
   - 5년주기 : 100,000원 〈개정 2019.4.17., 2021.4.26.〉
11. 자녀 입학축하금(초,중,고,대학) : 100,000원 〈신설 2019.4.17.〉

제 8 조(지급절차) ① 회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조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정산 후 익월 내에 지급한다. 다만, 4분기는 12월 내 지급한다. 〈개정 2017.6.29., 2022.9.22.〉

② 경조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휴직 등의 사유로 복직한 자는 복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제 9 조(상조회 조직) ① 상조회의 제반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외에 감사 및 간사를 둔다. 〈개정 2019.4.17.〉

1.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경영본부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상조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 2016.1.6., 2016.4.12., 2017.6.29., 2020.11.27.〉

2. 위원은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6., 2017.6.29., 2019.4.17., 2020.11.27.〉

3. 감사는 운영지원부 회계담당자로 하며, 상조회의 예산 및 결산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4., 2021.4.26.〉

4. 매 회계연도별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간사는 운영지원부 총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3.24., 2021.4.26.〉

제10조(정기·임시회)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회계연도 중에 개최하며, 해당 연도 주요사업계획과 전년도 결산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

②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제11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6.29.〉

제12조(회계연도) 상조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3., 2016.1.6.〉

제13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2019.4.17.〉

제14조(회칙개정) 상조회의 회칙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2013.7.31.〉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3. 7. 3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본회 발족 당시 재직 중이면서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추후 가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회의 회원 자격이 발생된다.

부칙 〈2015.1.23.〉

(시행일) 회칙은 2015. 1.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6.〉

(시행일) 회칙은 2016. 1.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2.〉

제 1 조(시행일) 회칙은 2016. 4.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회칙 제7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4.〉

(시행일) 회칙은 2017. 3.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9.〉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 6.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①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미지급 경조금은 회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납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한하여 지급한다.

②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선임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회칙 시행일을 선임일로 하고, 그 임기는 제9조제2항2호에 따른다.

부칙 〈2019.4.17.〉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4.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회칙 제5조, 제7조는 2019.1.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2020.11.27.〉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0.11.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회칙 제5조는 2020.1.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2021.4.26.〉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1.4.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회칙 제4조, 제7조는 2021.1.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2022.6.9.〉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2.6.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회칙 제4조, 제5조는 2022.1.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2022.9.22.〉

(시행일) 이 회칙은 2022.9.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6.29., 2021.4.26.〉

상조회 가입신청서

입 사 일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상조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상조회 운영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6.29.〉

경조금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사유			
신청금액			
계좌번호			

위와 같이 경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증빙서류
- 결혼 : 청첩장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망/출산 : 경조사 게시물
- 기타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접수일 : 년 월 일

결 재	간 사	운영위원장
결재일	. . .	. .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06.09.〉

상조회 탈퇴신청서

입 사 일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본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상조회 탈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상조회 운영위원장 귀하